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3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조승래・김민기・양정숙

김회재 · 장철민 · 이규민

전혜숙 · 강선우 · 이성만

윤건영 • 변재일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 (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과학기술진흥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u>수 있다.</u>
<u>⑤</u> ・ <u>⑥</u> (생 략)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